성주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일자 : 2017년 월 일
제 출 자 : 성 주 군 수

1. 개정이유

○ 국민들이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하고 「지방세기본법」은 전부개정(법률 14474호, 2016. 12. 27. 공포, 2017. 3. 28. 시행)됨에 따라, 군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은 제정하는 「성주군 군세 징수 조례」에 이관하고,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의 체계에 맞도록 전부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륜자동차 전국 무관할 등록에 따른 자동차세 신고업무 위·수탁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나.「지방세기본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서류송달의 방법, 교부금전의 예탁, 지방세심의위원회 명칭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다. 제정되는 「성주군 군세 징수 조례」로 조문 이관

- 체납처분유예대상 중 성실납부자(종전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등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기획감사실-2653('17.3.20)〕

라. 성별영향평가 분석 : 개선사항 없음〔주민복지과-17621('17.3.21)〕

마. 입법예고 : 의견없음〔기간: '17.3.23~ '17.4.12〕

바. 행정자치부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안 : 지방세정책과-111(2017. 3. 8)호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성주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성주군 군세 기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령과의 관계) 성주군 군세 (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부과·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징수의 권한 위임 등)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위임받은 경상북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군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읍·면장에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조례 및 「경상북도 도세 기본 조례」(도세의 부과·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조(자동차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성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사용신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군 관할 외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의무를 위탁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른 시·군·구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등록면허세·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이·반장에게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이·반장에게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군수는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성주군 금고에 예탁한다.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군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성주군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성주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68조”를 “「지방세징수법」 제18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67조” 를 “「지방세징수법시행령」 제31조” 로 한다.

제10조제3항 본문 중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 를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43조” 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성주군 군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